

영등포구의회
제145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5. 27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9. 5. 21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제정(제안) 이유

-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세계적 문인이자 오랜 기간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(具常)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,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, 향후 국내 문화예술 중심도시 영등포의 이미지 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기념사업은 우리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함(안 제2조)

-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(안 제3조)
-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,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으로,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으로 함(안 제4조)
-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,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,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,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함(안 제5조)
- 운영위원회는 총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,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0조 및 11조)
-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념사업에 소요될 사업예산을 결정하되,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함(안 제12조)
-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·감독할 수 있음(안 제13조)

관련법규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■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강원도 :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- 장성군 : 장성군 홍길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
- 홍천군 : 홍천군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
- 청도군 : 청도군 이호우·이영도 시조문학상 조례
- 익산시 : 가람 시조 문학상 운영 조례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(具常) 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,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(具常)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
- 기념사업은 우리구와 사단법인 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되,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
-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,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며,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,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,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,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

- 운영위원회는 총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,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
-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념사업에 소요될 사업예산을 결정하되,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,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- 검토결과,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, 기념사업 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5. 27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문화예술진흥법

- 제3조 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(시책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